남원시 공고 제2012-996호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남원시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09월28일남원시장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

-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과 평가 시기 (안 제5조)
-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안 제6조)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안 제7조)

3. 의견 제출

- 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재난관리과 전화 063-620-6963, FAX 063-620-6747
-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재난관리과 담당자(063-620-6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진 등으로 시설물의 추가 붕괴가 생기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진재해"란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남원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적용된다.
-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 도평가를 실시한다.
 -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에 따른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 ②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관련 학·협회장, 평가단원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하여 야 한다.
-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남원시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남원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남원시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 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 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남원시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 ④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남원시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남원시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남원시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있어 다음 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 2. 시설물별 피해상황
 - 3. 화재 발생 상황
 -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 ② 남원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 ⑤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남원시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 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남원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남원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남원시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남원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남원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 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남원시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의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Ç	<u>위험도 평</u> 7	<u> 단원 등</u>	<u>록신</u>	청서 (제5조제5항	<u>관련)</u>		
회원번호			신 청 일					l
성 명			주민번호					
소속			직 급					
주소 : (-)	,			전화 : ()			
					FAX: ()			
E-mail:								
□ 철도		□ 교량・터널□ 원자력시설□ 기타(댐·저수지 항만			
본인은 「 를 제출합니		책법」 제21조	- 시설물 위	험도 3	평가단원으로 활·	동하고자	 - 등록신	··········청서
		남원시	재난안전대	책본부	장 귀하			
					20 년 신청 연		월	일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0 0 - 0 0 0 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명 가 단 원 증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 평 가 자 :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620-6963]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 평 가 자 :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620-6963]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 평 가 자 :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620-6963]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620-6963]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비대상

- 조례 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 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 2012 - 1017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대 지	건축주	허가(협의) 및	도로	도로	도로	이해관계인		
번호	위치	성 명	신고번호	길이 (m)	너비 (m)	면적 (m²)	지 번	편입면적 (m²)	토지소유자
2012-15	남원시 신촌동 119-4	소 재 영	2012-건축과- 신축신고-291	89.8	6	539	신 촌 동 119-5	539	소재영 이영나 이정숙

남원시 공고 제 2012 - 1020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은 11명 이내로,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정함
-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제척사유: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 업체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 기피사유: 위원장 또는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한 경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정함(안 제7조)
- 바. 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사. 위원회 회의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아.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정함
- 3. 자치법규안: 따로붙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다. 제출기관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민원과
-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075),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그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조사담당(063-620-6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워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②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재적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 ·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장 또는 해당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 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지적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남원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⑧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 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모아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경계결정의 이

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 교차 이내인 경우
-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 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공고 제 2011 - 1024호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8.

남 원 시 장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규칙)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별표 1)
- 조문 정비(안 제3조,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 (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620-6702), 인터넷,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 법무담당(전화620-60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규칙안 각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남원시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명 띄어쓰기) 남원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법령 변경 등) 남원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남워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남원시 규칙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명 띄어쓰기) 남원시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법령 변경 등) 남원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표 1]

규칙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소관부서	현 행	개 정	비	고
2 . 2 . 52	남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시의회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기획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 행규칙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민의장조례시행규칙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사무인계인수규칙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남원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남원시이웃사촌모임운영규칙	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		
총무과	남원시청원경찰복무규칙 남원시지방고용진밀병정진공무원자진퇴진수당지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		
	급에관한규칙	급에 관한 규칙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남원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남원시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민원과	남원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 칙	남원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문화관광과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체육과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주민복지과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여성가족과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 →1 →1	남원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재정과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제과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농정과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 행규칙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
	조례시행규칙	한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
건설과	시행규칙	례 시행규칙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건축과	남원시건축조례시행규칙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홍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
3.7.1		칙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시행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
 농업기술센터	규칙	규칙
	남원시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남원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시설사업소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지스트 계심 2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읍・면・동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규칙의 인용 법령 등 개정(제3조 관련)

소관부서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정	비고
의회사무국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제17조 중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낫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1조 중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낫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낫표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낫표
기획실		제4조 중	상표권	「상표법」	낫표
기획설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낫표
		제6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제명	남원시 공무원행동강령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명변경
감사실	남원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띄어쓰기
		제16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낫표, 띄어쓰기
총무과	남원시청원경찰복무규칙	제7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 7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이웃사촌모임운영규칙	제1조 중	남원시 이·통 반 설치조례 제16조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제6항	낫표, 상위법 개정
민원과	남원시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 영규칙	제6조제2항, 제 12조제2항 중	총무업무담당자	주민생활담당주사 -	직제개편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낫표, 띄어쓰기
문화관광과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낫표, 띄어쓰기
교육체육과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 칙	제1조 중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 칙	제1조 중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낫표, 띄어쓰기
주민복지과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 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장애인복지법」,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낫표, 띄어쓰기
구한국시와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낫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 	제1조 중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낫표, 띄어쓰기
	칙	제9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	제1조 중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낫표, 띄어쓰기
여성가족과	칙	제9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규칙	제1조 중	남원시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낫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 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물품관리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재정과		제1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장	직제개편
	남원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수입증지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시 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낫표, 띄어쓰기
경제과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저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1조 중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농정과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호 중	농업기반담당주사	농업시설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제4조제2호 중	산업담당주사	산업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	제1조 중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침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낫표, 띄어쓰기
산림과	조례시행규칙	제8조 중	남원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 2-		제1조 중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낫표, 띄어쓰기
도시과	남원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상위법 개정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	제1조 중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수 조례」	낫표
-1 11-1		제1조 중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정수조례」	낫표
건설과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 규칙	제2조 중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낫표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78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소관부서	현 행	개 정	비	Ē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공인조례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기획실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남원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원시외회사무기구설치및적원경수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급원시의회사무기구선치빛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자무기구 선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라인시의회생출식 ·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라인시의회생출식 ·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라인시의회생출식 ·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라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기급에관한조례 라인시청외의원상해등보상급기급에관한조례 라인시청업수의사업특별회계실치조례 라인시 경영수의사업특별회계실치조례 라인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라인시소송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 조승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 조송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 조송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 조송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 조송수행자포상급기급조례 남인시청모음 · 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인시청모음 · 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인시청모음 · 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인시청모음 · 연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인시청모음 · 연ㆍ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라인시장소중위원회조례 남인시청모음 · 연ㆍ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라인시장상조례 남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스 조례라인시장무원수당지급조에 남인시청모음 · 연ㆍ보인시청모음 · 연·보인시청임회회의 선립ㆍ운영에 관한조례라인시장원원회실시조례 남인시청관원회회의 선립ㆍ운영에 관한조례라인시장회원회의의 선립ㆍ운영에 관한조례라인시장회원회의의 선립ㆍ문영에 관한조례라인시장회원회의의 선립ㆍ문영에 관한조례라인시장회원회의의 선집 · 운영 · 전에 남인시문화예술공간및 미술장식실치에관한조례라인시장화연관회원회의 선지및 운영 · 전에 당신시랑관원권회의회선지및은영조에 남인시청관원권회의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한장관권집의회원지및은영조에 남인시청관원권회의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한장관권집의회원지및은영조에 남인시청관원권회의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한장관권집의회원지및은영조에 남인시청관원권회의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행관원권회의회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행관원권회의회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행공원권회의회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행공원관권회관 실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시행공원관관권회관계 선지 및 운영 · 전에 당신주장권수회관 실지 및 · 연ㆍ보인주장권수회관 실지 및 · 연ㆍ보인주장권수회관 실제 및 · 연ㆍ보인주장권수 · 전체 · 전			
	남원시포상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총무과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남원시공인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기조례	남원시기 조례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대해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원시의회 장인 조례 공무원의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한조례 남원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라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원시 조혜·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급 지급 조례 조례 남원시 소송수전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라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장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장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장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라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문화관광과	남원시의회 상인조례 남원시의회생인조례 남원시의회생선 - [단변학수있는관계공부원의 납원시의회에 출석 - [단변학 수 있는 관계공두원 범위에 관한 조에 남원시의회에원성하를보상근지급에관한조례 남원시상정통관리운용및상료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성영등관리운용및상료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성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원시소총사건수행중인등의실비변상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남원시소총사건수행중인등의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남원시고보면호사조례 남원시장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장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장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장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장전조례 남원시장전조례 남원시장전조례 남원시장전조례 남원시장전조례 남원시장전조함원회조해 남원시장전조함원회조해 남원시 공원 조례 남원시장문문화유산보호조해 남원시 공원 조례 남원시장로본화유산보호조해 남원시 공원 조례 남원시장로본화유산보호조해 남원시 공원 조례 남원시장로본화유산보호조해 남원시장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장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장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장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청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청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청로자라한지급조해 남원시 공원조하는 보호 조례 남원시문화예술건통기급관리조해 남원시 공화예술 공기급 관리 조례 남원시를관취원회설치고하는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기급 관리 조례 남원시청로자리는 한원시를 공해결 출기를 관리 조례 남원시청본라예술원회의철치및윤영조에 남원시 공학제조합 경치 및 운영 관례 라원시를관점원회회설치및윤영조에 남원시 공학제조합 경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원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관광병점임회 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원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백용반점혐의회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원수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원수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장선수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백동면중공원수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대원시 백동면중공장선수회관설치 및 운영관리 기관인 백원시 발원시 발원 및 문항 관계 대원시 백동면중공장선수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남원시흥부제조례	남원시 흥부제 조례		
	임회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_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교육체육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복지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 에관한조례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 가에 관한 조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1.1.1.7.1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여성가족과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수런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금운용관리조례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과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남원시환경기본조례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조 례
재정과	남원시수입증지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41847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거 게 기	레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조례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경제과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나의 지노고기근ス서미과리사어트변하게서 키ス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제78호

	례	조례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농정과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43. 9.53. 5. 3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원예허브과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남원시 1지역1명품 육성 조례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도시과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건설과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 금지급조례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 금 지급 조례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는 기 : : : : : : : : : : : : : : : : : :	는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보건소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농업기술센터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설사업소	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읍·면·동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012. 9. 28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제3조 관련)

소관부서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 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	제8조제1항 중	상표법	「상표법」	낫표
	례	제10조 중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낫 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자치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개 정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낫표
기획실		제2조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 호 중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상위법 개정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낫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낫표, 상위법 개 정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낫표, 상위법 개 정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지방자치법」 제16조	낫표, 상위법 개 정
감사실	남원시 춘향신문고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 례	제4조제1항 중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기
총무과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 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9호 중	남원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낫표, 인용법 개

					정
		제3조제21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낫표
	남원시주민투표조례	제1조 중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낫표
		제4조제3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 례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자치법」 제90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여비조례 -	제4조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낫표
		제4조제4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낫 표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중	의료법	「의료법」	낫표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 0 =11 0 ¬1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9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	상위법 개정
교육체육과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상위법 개정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	상위법 개정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호 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낫표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복지기획담당주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복지행정담당주사	낫표, 직제개편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낫표
주민복지과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제3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정
	가에관한조례	제7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u></u> 낫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낫표, 상위법 정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낫표
		제3조 중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3번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주소변경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낫표
		제12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6항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제1조 중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 대책위원회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제2조 중	전라북도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전라북도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나이나 과정하고 사라 미 이 어 거래	제10조의2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제8조제1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직제개편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	낫표, 상위법 정
여성가족과		제1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낫표
, , , ,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복지사업을지 원하기, 관리 운용에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제3조제4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제5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	직제 개편
	제5조제4항, 제12 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	용어정리
	제9조제5항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낫표, 띄ㅇ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낫표, 상 정
급현시정소현시오귀현의귀속에단면소데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낫표, 상 정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	낫표, 상 정
	제명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 원회	낫표, 상 정
	제명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낫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2, 청소년 지 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개
	제2조 중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제5 조, 제5조제1호, 제 6조, 제7조, 제7조 제1호, 제7조제3호, 제8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조명), 제11조제1항, 제11 조제3항, 제11조제 4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호, 제15 조 중	지원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
	<u> </u>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기

		30% 2 2.			
		제2항, 제11조제6			
		호, 제20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호, 제29			
		조제2호, 중			
		제2조제5호, 제8조			
		제2항제2호, 제11			
		조제4호, 제11조제			
		5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	보육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상위법 개정
		조제3항, 제25조제			
		1항제8호, 제27조			
		제1항, 제27조제2			
		ō}-,			
		제11조제2호, 제6			
		장,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	공립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조제1항, 제24조제			
		2항 중			
			특수보육시설	특수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제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낫표
		제9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낫표
환경과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u></u> 낫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낫표
		제4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낫표
		제2조제/ㅎ가모 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나 표

			한 법률」	
	제2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면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낫표
	제1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 법」	낫표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낫표
	제3조제1호 중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낫표
	제3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낫표
	제3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낫표
	제3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낫표
	제3조제5호 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	「도로법」 제2조제4호	낫표, 상위법 정
	제3조제7호 중	철도법	「철도건설법」	낫표
	제3조제8호 중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낫표
	제3조제9호 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	낫표, 상위법 정
	제3조제10호 중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3조제11호 중	공연법	「공연법」	낫표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제9조제2항, 제10 조제3항 및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시행령 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20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낫표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폐기물관리법」 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낫표, 정	상위법	
		제3조 중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낫표		
		제4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낫표, 정	상위법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낫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재정과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세정작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제1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낫표		_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	낫표, 정	상위법	
경제과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15조 중	소방법 제3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소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낫표, 정	상위법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제3조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낫표, 정	상위법	
		제1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낫표, 정	상위법	_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 제1호	낫표, 정	상위법	
농정과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5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 제2호	낫표, 정	상위법	
		제5조제2항제3호 중	농어존정비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낫표, 정	상위법	_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농어촌정비법」 제123조		상위법	

		제5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13조	「농지법」 제14조	낫표, 정	상위법	개
		제5조제2항제6호 중	「농림사업심사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낫표, 정	상위법	개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상위법	개정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상위법	개정	
		제2조제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급현시 중 은중가 다 하인 다 에 된 인소 데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제5조제3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낫표, 정	상위법	개
원예허브과		제2호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재무회계규칙」	· 「남원시 보조금 관린조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인용법	개정	
축산과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	상위법	개정	
국산의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	
		제1조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낫표, 정	상위법	개
		제1조 중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17조	상위법	개정	
시리하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	제3조제17호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낫표, 정	상위법	개
산림과	례	제12조 중	산림법시행령 제33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낫표, 정	상위법	개
		제16조 중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낫표, 정	상위법	개
		제22조제1항제8호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삭제<상위법 개정>			

도시과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낫표, 상위법 정
		제13조제1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낫 표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 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낫표, 인용법 정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	제1조 중	지하수법	「지하수법」	낫표
	수조례	제1조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 표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낫표, 상위법 정
	나이가 소취되었으로 미 가요로 지스로게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중	소하천정비법	법	약칭
건설과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낫표, 상위법 정
	수조례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131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76조	낫표, 상위법 정
	급현시오도속구현인사구급급경구소데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 내지 제4조	법 제2조	상위법 개정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64조제3항	낫표, 상위법 정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	법 제13조	상위법 개정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	법 제64조제2항	상위법 개정
교통과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낫표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낫표, 상위법 정
		제3조제4항제3호가 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낫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u></u> 낫표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 항	낫표, 상위법 정
		제2조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	법 제36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	7 낫표, 상위법 정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 용어정리 낫표
		제4조제2호 중	법 제65조,영 제39조의2	법 제82조, 영 제56조	
	남원시식품진홍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2조제2항	법 제47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1조제1항	법 제63조제1항	상위법 개정
보건소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담당주사을	위생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주사를	용어정리
		제6조제6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제11조제1항 중	위생담당	위생업무 담당주사	낫표 낫표, 상위법 상위법 개정 나표 직제 직제 개편
		제12조 중	법 제71조제3항제1호	법 제89조제3항제1호	상위법 개정
		제13조 중	영 제7조의	영 제21조의	상위법 개정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낫표
	례	제8조 중	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	직제 개편
업기술센터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띄어쓰기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상수노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낫표, 상위법 정
읍·면·동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 할구역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낫표, 상위법 정